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. 2. 7 선고 2016가단430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

피 고

A

B

변론 종결 2017. 1. 17

판결 선고 2017. 2. 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6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㎡지상 시멘트블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갑 제1,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6. 6. 29. 원주시 C 대 6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, 피고는 2009. 5. 25. 원주시 E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2,67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,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㎡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나.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항변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매우 적은 면적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.

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,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(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다1092 판결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,

3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설정은

별지